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선착순 동호지정]

- **공급위치** : A-1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단지 브랜드명 : 광주선운2 레니체]
A-3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89 [단지 브랜드명 : 광주선운2 포리에]
- **공급대상** :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92세대 중 **86세대** [전용면적 55㎡]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49세대 중 **66세대** [전용면적 55㎡]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 계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이 불가능하며 잔여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주선운2 A-1,3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광주선운2는 신혼희망타운으로 A-1블록 828세대 중 공공분양 492세대, 행복주택 336세대, A-3블록 396세대 중 공공분양 249세대, 행복주택 147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2025년 4월 30일 최초 입주개시 되었습니다.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혼합됨)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02.(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광주선운2 A-1, A-3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공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공고문(2022.02.28.)을 준용하므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선운2 신혼희망타운 A-1블록 브랜드명은 RENICHE (레니체), A-3블록 브랜드명은 FORIE (포리에)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마이너스옵션, 추가선택품목,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청소, 인테리어 시공(줄눈·탄성 등 포함) 등은 주택 잔금 완납 및 키 불출 이후 가능합니다.(임시 키불출 불가)**
- **세탁가전(세탁기와 건조기)을 함께 설치 시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벽 부착물(보일러, 가스계량기, 시스템 선반)과 간섭으로 세탁가전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사이버 검본주택(www.lh-su2.co.kr) 및 팸플릿을 통하여 주택평형 및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물 샘플하우스 관람은 운영기간(평일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3시)에 한하여 가능**하며, 관람은 사이버 검본주택(www.lh-su2.co.kr)을 통한 사전예약제(당일예약 불가)로 운영됩니다.
- ※ 샘플하우스 세대는 단위세대 55B 형별이며, 금회 공급세대는 공간옵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불가합니다.
- ※ **실물 샘플하우스 관람안내**

구 분	장 소	샘플하우스 평형	관람시간	☎ 사전예약 문의처
광주선운2 신혼희망타운 단지내 샘플하우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43	전용면적 55B	(평일)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3시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062-360-3169

※ **상황에 따라 관람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관람은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2026.02.02.(월)) 현재 광주선운2 A-1, A-3블록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여부,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에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분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한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납입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안내

공 고	잔여세대 확인	선착순 계약체결
2026.02.02.(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공지사항 * 계약체결 전 잔여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2.(월) ~ 별도 공지 시까지,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방문 예약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LH광주전남지역본부 10층 판매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0층)

※ 선착순 공급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계좌입금, 계좌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 ⑤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신청접수자 본인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당일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작성)해야 합니다.(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당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현정수납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사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금융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금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보증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보장기대출” 확인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광주선운2 A-1블록(총 828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4~25층 6개동 86세대 [전용면적 55㎡]
- 광주선운2 A-3블록(총 396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2~28층 5개동 66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공유대지 면적 (㎡)	금회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지정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확장 여부	면적 (㎡)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 계											86		
A-1	055.8300A	55A	55.8300	23.9028	7.2574	44.6499	131.6401	확장	30.51	44.8330	6	25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055.5700B	55B	55.5700	23.7914	7.2237	44.4419	131.0270	확장	25.45	44.6242	57	25	
	055.9700C	55C	55.9700	23.9627	7.2756	44.7618	131.9701	확장	25.45	44.9454	9	25	
	055.6300D	55D	55.6300	23.8171	7.2314	44.4899	131.1684	확장	25.45	44.6724	14	24	
합 계											66		
A-3	055.8300A	55A	55.8300	23.7732	9.0235	42.7940	131.4207	확장	30.51	45.0899	1	27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055.7700B	55B	55.7700	23.7477	9.0137	42.7480	131.2794	확장	25.25	45.0414	54	28	
	055.8900C	55C	55.8900	23.7988	9.0332	42.8400	131.5620	확장	25.25	45.1384	11	27	

- * 잔여세대 동·호수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청약→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잔여세대 현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분양이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릿 등을 통해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계약 체결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계약체결일 이후 잔금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광주선운2 A-1, A-3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90일 이내에 입주(잔금납부 및 키볼출)하여야 합니다.(선납할인 적용 불가)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블록명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용자금(주택도시보증기금)
					계약시(10%)	입주시(90%)	
A-1	055.8300A	55A	1층	261,270	26,127	180,143	55,000
			2층	264,050	26,405	182,645	55,000
			3층	269,610	26,961	187,649	55,000
			4층	275,170	27,517	192,653	55,000
			5층~최상층	277,950	27,795	195,155	55,000

블록명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용자금(주택도시자금)
					계약시(10%)	입주시(90%)	
A-3	055.5700B	55B	1층	260,060	26,006	179,054	55,000
			2층	262,820	26,282	181,538	55,000
			3층	268,360	26,836	186,524	55,000
			4층	273,890	27,389	191,501	55,000
			5층~최상층	276,660	27,666	193,994	55,000
	055.9700C	55C	1층	261,930	26,193	180,737	55,000
			2층	264,710	26,471	183,239	55,000
			3층	270,290	27,029	188,261	55,000
			4층	275,860	27,586	193,274	55,000
			5층~최상층	278,650	27,865	195,785	55,000
	055.8300D	55D	1층	260,340	26,034	179,306	55,000
			2층	263,110	26,311	181,799	55,000
			3층	268,650	26,865	186,785	55,000
			4층	274,190	27,419	191,771	55,000
			5층~최상층	276,960	27,696	194,264	55,000
A-3	055.8300A	55A	1층	255,900	25,590	175,310	55,000
			2층	258,620	25,862	177,758	55,000
			3층	264,070	26,407	182,663	55,000
			4층	269,510	26,951	187,559	55,000
			5층~최상층	272,240	27,224	190,016	55,000
	055.7700B	55B	1층	255,630	25,563	175,067	55,000
			2층	258,350	25,835	177,515	55,000
			3층	263,790	26,379	182,411	55,000
			4층	269,230	26,923	187,307	55,000
			5층~최상층	271,950	27,195	189,755	55,000
	055.8900C	55C	1층	256,170	25,617	175,553	55,000
			2층	258,900	25,890	178,010	55,000
			3층	264,350	26,435	182,915	55,000
			4층	269,800	26,980	187,820	55,000
			5층~최상층	272,530	27,253	190,277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향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자금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 선택가능)

■ 발코니 확장

-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블록	타입	발코니 면적(m ²)	내역	계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A-1	55A	30.51	기본공사비(A)	65,114	15,185	12,424	9,405	16,480	11,620	1,000	6,315
			확장공사비(B)	72,429	16,891	13,820	10,461	18,331	12,926		
			계약자부담액(B-A)	7,315	1,706	1,396	1,056	1,851	1,306		
	55B 55C 55D	25.45	기본공사비(A)	64,388	15,439	12,463	8,290	14,509	13,687	1,000	6,415
			확장공사비(B)	71,803	17,217	13,898	9,245	16,180	15,263		
			계약자부담액(B-A)	7,415	1,778	1,435	955	1,671	1,576		
A-3	55A	30.51	기본공사비(A)	66,495	15,508	12,688	9,604	16,829	11,866	1,000	6,345
			확장공사비(B)	73,840	17,221	14,090	10,665	18,688	13,176		
			계약자부담액(B-A)	7,345	1,713	1,402	1,061	1,859	1,310		
	55B 55C	25.25	기본공사비(A)	65,396	15,681	12,657	8,421	14,737	13,900	1,000	6,412
			확장공사비(B)	72,808	17,458	14,093	9,375	16,407	15,475		
			계약자부담액(B-A)	7,412	1,777	1,436	954	1,670	1,575		

■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모두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됩니다.

블록	타입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A-1	55A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카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55B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카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55C			
	55D			
A-3	55A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카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55B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카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55C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모두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블록 타입	선택 유형	구분	선택품목	유·무상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단위:천원)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A-1블록 55A	공간 옵션	[알파룸-통합형]	1- 침실2/알파룸-통합	무상	침실2, 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2-1, 2-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현관팬드라-확대]	2-1- 현관팬드라+주방팬드라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	1,365	136	1,229		
	물품 옵션	카규	[침실1]	1-1- 불박아장	유상	미설치	2,045	204		1,841
				1-2- 불박아장+화장대	유상	미설치	2,195	219		1,976
A-3블록 55A	공간 옵션	카규	[드레스룸]	2-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미설치	985	98	887	
			[침실2]	3-1- 반침장	유상	미설치	1,132	113	1,019	
	3-2- 반침장+책상장	유상		미설치	1,348	134	1,214			
	3-3- 알파룸 통합 반침장	유상		미설치	2,147	214	1,933			
	[주방]	4- 알파룸 통합 반침장 (유아특화공간)	유상	미설치	2,028	202	1,826			
		4-1- 카운터수납장+냉장고장	유상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463	46	417			
5- 주방장식장		유상	미설치	823	82	741				
	6- 아일랜드석탁	유상	미설치	815	81	734				

	시스템 에어컨	7-1 거실+침실1	유상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970	397	3,573	침실2/알파룸 분리 시 7-1, 7-2, 7-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2/알파룸 통합 시 7-4 선택가능 (냉매배관만 설치가능)		
		7-2 거실+침실1+침실2			5,606	560	5,046			
		7-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6,860	686	6,174			
		7-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5,798	573	5,165			
	주방가전	8 하이브리드 쿡탑 —(안덕선2구+하이라이트1구)	유상	가스쿡탑 3구	598	59	539			
	바닥재	9 가능성 롱카펫(두께 6mm)	무상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제공					
현관중문	10 현관중문(불투명 안전필름)	유상	미설치	900	90	810				
A-1블록 55B 55C 55D	공간 옵션	[알파룸-통합형]	11 침실2/알파룸-통합	무상	침실2, 알파룸 분리	선택-시 무상-제공				
	물품 옵션	[침실1]	11-1 불박이장	유상	미설치	1,848	184	1,664	11-1, 1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11-2 불박이장+화장대	유상	미설치	2,009	200	1,809		
		[드레스룸]	12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미설치	1,042	104	938		
		가구	[침실2]	13-1 반침장	유상	미설치	1,132	113	1,019	침실2/알파룸 분리 시 선택가능 13-1, 13-2 중 하나만 선택가능
				13-2 반침장+책상장			1,348	134	1,214	
			13-3 알파룸 통합 반침장	2,147			214	1,933	침실2/알파룸 통합 시 선택가능 13-3, 13-4 중 하나만 선택가능	
			13-4 알파룸 통합 반침장 (유아특화공간)	2,028			202	1,826		
		[주방]	14 카운수납장+냉장고장	유상	감치냉장고장 +냉장고장	468	46	422		
			15 아일랜드식탁	유상	미설치	815	81	734		
	A-3블록 55B 55C	시스템 에어컨	6-1 거실+침실1	유상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676	367	3,309	침실2/알파룸 분리 시 6-1, 6-2, 6-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2/알파룸 통합 시 6-4 선택가능 (냉매배관만 설치가능)	
			6-2 거실+침실1+침실2			5,667	566	5,101		
6-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6,921			692	6,229			
6-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5,830			583	5,247			
주방가전		7 하이브리드 쿡탑 —(안덕선2구+하이라이트1구)	유상	가스쿡탑 3구	598	59	539			
바닥재		8 가능성 롱카펫(두께 6mm)	무상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제공					
현관중문	9 현관중문(불투명 안전 필름)	유상	미설치	900	90	810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 잔금(주택도시기금), 옵션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블록명	타입	관리비에치금	블록명	타입	관리비에치금
A-1	55A	236,950원	A-3	55A	236,550원
	55B	235,840원		55B	236,300원
	55C	237,540원		55C	236,810원
	55D	236,100원			

- 입주(열쇠불출) 또는 사실상의 잔금(용자금이 있는 경우 용자금을 포함) 완납 중 빠른 날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 투자비 등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세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분양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II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2.) 현재 국내거주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2.02. ~ 2026.02.02.)**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시점기간 내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공소제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신청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선착순 공급일정 및 계약절차, 구비서류**

1. 선착순 공급일정 및 계약절차

- **선착순 공급일정 : 2026.02.02.(월) ~ 별도 공지 시까지, 평일 10:00 ~ 16:00 (점심시간 12:3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계약체결 전 잔여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공지사항)
 ※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방문 예약 바랍니다. (T. 062-360-3169)
 ※ 선착순 공급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등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등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 ⑤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 계약이후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자는 적격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며, 소명불가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에 오셔야 등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가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② 신분증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계약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 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계약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⑩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⑪ 도장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⑫ 설명서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계약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주택공급계약, 제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본인(계약자) 도장(인감 도장 외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V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자로 불이익(공급계약 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비용 및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외부 내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일반사항,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광주선운2 A-1, A-3블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2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개교 현황

학교	학교명	위치
유치원	운수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31
초등학교	선운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11
중학교	선운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20번길 37
고등학교	보문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529번길 37
특수학교	선예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7

■ 개교 예정

학교	위치	학교명	개교시기
초등학교	운수동, 선암동	운수초등학교	'26.03월 개교예정

※ 학교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구역 및 학생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전(세탁기와 건조기)을 함께 설치 시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벽 부착물(보일러, 가스계량기, 시스템 선반)과 간섭으로 세탁기전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일반	장애인	임상부	전기차	일반
A-1	999대 (1.2대)	계	877대	34대	35대	50대	3대
		1층	435대	17대	17대	25대	3대
		2층	442대	17대	18대	25대	-
A-3	480대 (1.2대)	계	421대	17대	17대	24대	1대
		1층	188대	9대	8대	12대	1대
		2층	233대	8대	9대	12대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 될 수 있음

(A-1블록)

- 본 아파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
- 본 단지 여건상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 설치되며 단지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주차 통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지하2층 2.1m) 임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에 설치 된 전기차 충전기 50대 중 급속충전기는 1대, 완속충전기 49대는 임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3대)는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A-3블록)

- 본 아파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 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
- 본 단지 여건상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되며 단지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주차 통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지하2층 2.1m) 임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에 설치 된 전기차 충전기 24대 중 급속충전기는 1대, 완속충전기는 23대 임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1대)는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410-82-17397)	계룡건설산업(주)(314-81-0795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211-86-20779) (계약금액 : 6,776,074천원)
A-3		신동아건설산업(주)(106-81-33808)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211-86-20779) (계약금액 : 3,424,926천원)

5.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안내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정보 및 문의
<p>■ 주 소 : [PC] www.lh-su2.co.kr [모바일] www.lh-su2.co.kr</p>	<p>■ 인터넷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메뉴 → 분양주택 → 공고문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앱(App) 설치 → 『청약』 메뉴 → 분양주택 → 공고문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광주전남본부 판매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0층 (062-360-3169, 3357)</p>

2026. 02. 02.



광주전남지역본부